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가합54351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2. 6. 23 선고 2022나200347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0가합543510 판결

전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진명

담당변호사 성승용

피 고 1. 주식회사 A

2. B

3. 주식회사 C

4.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유

담당변호사 최용성

5. 주식회사 E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민기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곽향기

변 론 종 결 2021. 9. 29.(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D에 대하여) 2021. 11. 10.(피고

주식회사 E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21. 12. 22.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786,305,734원과 그 중 251,028,751원에 대하여는 2020. 3. 16.부터, 533,763,911원에 대하여는 2020. 2. 24.부터 2020. 5. 25.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주식회사 A은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252,533,600원과 그 중 251,028,751원에 대하여 2020. 3. 16.부터 2020. 5. 25.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다. 피고 주식회사 C는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533,772,134원과 그 중 533,763,911원에 대하여 2020. 2. 24.부터 2020. 5. 25.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D,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 주문 제1항과 같다. 피고 D,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 :

①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피고 B 사이에 2019. 1. 7.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D은 피고 B에게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1. 25. 접수 제50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②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E와 피고 B 사이에 2019. 8. 21.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주식회사 E는 피고 B에게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 8. 28. 접수 제6570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피고 A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300,000,000원을 대출받는 데 따른 대출금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금액을 270,000,000원, 신용보증한도금액을 300,000,000원, 보증기한을 2017. 12. 21.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의한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은 2015. 12. 24.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금액과 보증기한이 매년 변경되었고, 2018. 12. 26. 보증금액이 245,700,000원으로, 보증기한이 2019. 12. 20.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

2)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와 사이에, 피고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550,000,000원을 대출받는 데 따른 대출금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원금을 495,000,000원, 보증기한을 2016. 10. 11.부터 2017. 10. 10.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의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C는 2016. 10. 13.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55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기한이 매년 변경되었고, 2019. 10. 8. 보증기한이 2020. 10. 8.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

3) 원고는 피고 C와 사이에, 피고 C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300,000,000원을 대출받는 데 따른 대출금채무의 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원금을 240,000,000원, 보증채무최고액을 312,000,000원, 보증기한을 2016. 11. 24.부터 2017. 11. 23.까지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에 의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C는 2016. 11. 24.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은 보증기한이 매년 변경되었고, 2018. 11. 23. 보증금액이 180,000,000원, 보증채무최고액이 234,000,000원, 보증기한이 2019. 11. 22.까지로 최종 변경되었다.

4) 이 사건 제1, 2, 3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A, C는 원고가 지급한 원리금에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에서 정한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이율에 의한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19. 4. 1.부터 현재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은 연 8%이다.

또한 신용보증기금법과 관련규정에 따르면 신용보증을 받은 주채무자인 피고 A, C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원고가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 중 후일자의 다음날부터 원고의 대위변제일 전날 및 주채무 이행일까지의 기간 동안 당해 보증건의 보증료율에 연 1000분의 5의 비율을 더한 율로 계산한 위약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피고 A, C는 원고가 지출한 채권보전비용을 상환하여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1) 피고 A, C는 2019. 1. 25.경부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다가 피고 A은 2019. 11. 27.경, 피고 C는 2019. 11. 22.경 대출금채무의 원금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2)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20. 3. 16. 중소기업은행에 피고 A의 연체 대출원리금 251,028,751원을 대위변제하고, 2020. 2. 24. 피고 C의 연체 대출원리금 합계 537,363,725원(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대출원리금 502,865,286원 및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대출원리금 34,498,439원)을 대위변제하였다.

3) 원고는 피고 C로부터 2020. 2. 24. 3,147,974원, 2020. 3. 16. 428,118원, 2020. 3. 23. 23,722원 합계 3,599,814원을 회수하여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에 의한 대위변제금의 일부 변제에 충당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피고 A, B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비용으로 합계 636,489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 B의 부동산 처분행위

1) 피고 D은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B로부터 피고 B 소유의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9. 1. 25.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9. 1. 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는 2019. 8. 21. 피고 주식회사 E(이하 ‘피고 E’라고 한다)와 사이에, 별지 2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피고 B, 채권최고액 18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E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8. 28. 접수 제65701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① 피고 A, B, C에 대하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② 피고 D, E에 대하여 :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 C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에 따라 ①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대위변제금 251,028,751원, ②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인 2019. 12. 21.부터 대위변제 전날인 2020. 3. 15.까지 86일 동안의 미이행금 245,700,000원에 대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 868,360원($= 245,700,000\text{원} \times 15/1,000 \times 86/365$, 원 이하 버림), ③ 채권보전비용 636,489원 합계 252,533,600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251,028,75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3. 1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20. 5. 25.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2)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3신용보증약정에 따라 ① 보증채무 이행에 따른 대위변제금 합계 533,763,911원($=$ 이 사건 제2신용보증약정의 대위변제금 502,865,286원 - 일부변제금 3,599,814원 +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의 대위변제금 34,498,439원), ② 이 사건 제3신용보증약정의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 다음날인 2020. 2. 21.부터 대위변제 전날인 2020. 2. 23.까지 3일 동안의 미이행금 34,080,000원에 대한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위약금 5,320원($= 34,080,000\text{원} \times 19/1,000 \times 3/365$, 원 이하 버림, 이하 같다), ③ 일부변제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 2,903원($= (3,147,974\text{원} \times 8/100 \times 1/365) + (428,118\text{원} \times 8/100 \times 22/365) + (23,722\text{원} \times 8/100 \times 29/365)$) 합계 533,772,134원과 그 중 대위변제금 533,763,91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20. 2. 24.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20. 5. 25.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3) 피고 B는 피고 A, C와 연대하여 786,305,734원($= 252,533,600\text{원} + 533,772,134\text{원}$)과 그 중 이 사건 제1신용보증약정의 대위변제금 251,028,751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20. 3. 16.부터, 이 사건 제2, 3신용보증약정의 대위변제금 533,763,911원에 대하여는 그 대위변제일인 2020. 2. 24.부터 각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송달일인 2020. 5. 25.까지는 약정지연손해금률인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D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 1)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등기부 기재와 같이 2019. 1. 7. 체결되었고, 당시 피고 B는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제1부동산을 피고 D에게 매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2)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피고 D의 남편 F은 피고 B와 20년 정도 알고 지내던 사이로 2017. 5.경 피고 B가 F에게 노후를 보내기 위한 전원주택 부지를 마련해 두었다면서 그 일부를 매수하도록 권유하여 피고 D 명의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7. 7. 및 2017. 11.경 계약금과 잔금 전액을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어 두고 있다가 2019. 1.경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인 바,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A, C가 자금난을 겪기 훨씬 전에 이미 체결된 것이어서 사해행위가 될 수 없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2019. 1.경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피고 D은 피고 A, C의 재무상황 내지 피고 B의 무자력 여부를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과 피보전채권의 성립 여부

- 1) 피고 D이 2019. 1. 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올라 제1 내지 9호증의 기재와 증인 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 D의 주장과 같이 2017. 5.경 체결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① 피고 D은 피고 B에게 2017. 7. 6. 40,000,000원, 2017. 11. 28. 57,000,000원 합계 97,000,000원을 송금하였는데, 그 송금의 '적요'란에 모두 '대부도G'이라고 기재하였다.
 - ② G은 피고 B의 처이고 이 사건 제1부동산은 대부도에 위치하고 있는데, 위 돈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 외에 다른 용도로 지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정은 나타나지 않았다.
 - ③ 이 사건 제1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는 피고 D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9. 1. 7.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같은 일자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존재하나, 이는

피고 B와 피고 D이 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해 편의상 등기신청 부근의 날짜로 작성한 것일 수 있다.

④ 피고 D은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건축주 명의를 피고 B에서 피고 D으로 변경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 지상에 단층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그 건물은 공부상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최초의 계약서(을라 제2호증)에 첨부된 가분할도의 모습은 전원주택의 건축을 위한 토지분할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고 D이 건축한 건물의 실제 모습(을라 제6호증)은 소매점이라기보다는 전원주택에 가까운 바, 피고 D의 주장과 같이 건축법령의 제한으로 주택이 아닌 소매점으로 신축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⑤ 피고 B도 이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7. 5.경 체결하였고, 매매대금은 자신의 처 G 명의의 계좌로 2017.경 지급받았으며, 피고 D과 H이 전원주택을 지을 목적으로 구입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 D의 주장에 부합한다.

2)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인 2017. 5.경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고, 당시에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을 뿐 피고 A, C가 대출금채무의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전이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아무런 주장증명이 없다.

이처럼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일이 2017. 5.경 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거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원고는 피고 D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

4. 피고 E에 대한 청구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가 무자력 상태에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제2부동산을 피고 E에게 담보로 제공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E는, 피고 E의 피고 C에 대한 채권압류를 해제하여 피고 C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피고 B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인 2019. 8. 21. 아직 발생하지 않은 상태였으나, 당시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은 이미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9. 8. 21. 이미 피고 A과 피고 C가 대출금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기 시작한 상태였고, 그 후 2019. 11.경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2020. 3. 16.경 및 2020. 2. 24.경 피고 A과 피고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여 그 연대보증인인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이 발생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이 된다.

다. 피고 B의 무자력

I조합의 금융거래정보회신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 B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9. 8. 21. 당시 안산시 단원구 J 내지 K 토지(이 사건 제1부동산과 이 사건 제2부동산 포함)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안산시 단원구 L 내지 K 토지의 2020. 11. 6. 기준 시가는 375,228,000원이고, 안산시 단원구 J 토지의 시가는 약 88,992,210원(= 97,000,000원 × 589㎡/642㎡) 상당이므로, 피고 B의 적극재산은 약 464,220,210원인데 반해 피고 B의 소극재산은 원고에 대한 784,792,662원의 구상금채무 외에도 상당한 금액의 채무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

라.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채무자가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함으로써 일반 채권자들을 위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를 유발 또는 심화시킨 경우에 그 행위가 채권자취소의 대상인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중, 무자력의 정도, 법률행위의 경제적 목적이 갖는 정당성 및 그 실현수단인 당해 행위의 상당성, 행위의 의무성 또는 상황의 불가피성, 채무자와 수익자 간 통모의 유무와 같은 공동담보의 부족 위험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정도 등 행위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행위를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최종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들과 을마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B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이 궁극적으로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E는 피고 C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모두 이행하였으나 피고 C로부터 공사대금 158,54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

② 이에 피고 E는 피고 C를 상대로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인천지방법원 2018차5600호)을 신청하고, 피고 C의 M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의 압류를 신청하여 2019. 2. 26. 그 압류명령(인천지방법원 2019타채2034호, 이하 ‘이 사건 압류’라고 한다)을 받았다.

③ 피고 C는 2019. 8. 21. 피고 E와 사이에,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하면서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는 조건으로 대표이사인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제2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B와 피고 E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이 사건 압류가 해제되었다.

④ 피고 C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인데, 전기공사업을 하려는 자는 공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사업의 등록을 하려면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M공제조합(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기공사업법 제4조 제2항,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제2호).

⑤ M공제조합은 ‘조합원의 채무에 대한 보증’, ‘조합원이 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자금 등 필요한 자금의

용자' 등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으로, M공제조합은 입찰보증, 계약보증, 공사이행보증, 하자보수보증, 손해배상보증 등 조합원의 채무에 대한 다양한 보증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전기공사공제조합법 제9조, 전기공사공제조합법 시행령 제10조의2).

⑥ M공제조합은 전기공사업등록자 또는 신규로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고 있는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기준금액의 100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합에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출자증권 200좌 이상을 출자하여야 하고, 그 출자 또는 예치금에 대한 압류 등이 집행되었을 경우 발급받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효력이 상실된다(M공제조합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발급요령 제4조 제1항, 제10조 제1항 참조).

⑦ 결국 전기공사업자인 피고 C로서는 이 사건 압류가 유지될 경우 M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게 되어 전기공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피고 B가 자신의 개인재산을 채권자인 피고 E에게 담보로 제공한 것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A, B,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D, E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이원석, 판사 최석진, 판사 조아람

별지 1목록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J 대 589㎡
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N 대 316㎡ 중 지분 316분의 53
(이상 현 D 소유 내지 지분 공유, 춘천지방법원 등기과 관할)

별지 2목록

부동산의 표시

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L 임야 548㎡
2.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O 임야 552㎡
3.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P 임야 549㎡
4.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Q 임야 549㎡

(이상 현 B 소유, 수원지방법원 등기국 관할)

